

#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 방안 및 실무추진체계 연구\*

## A Study on the Accreditation Method and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Childcare Teacher Education Department

권기남<sup>1</sup> 김유미<sup>2</sup> 조용남<sup>3</sup> 민미희<sup>4</sup>

Kinam Kwon<sup>1</sup> Yumi Kim<sup>2</sup> Yong Nam Cho<sup>3</sup> Mihee Min<sup>4</sup>

### ABSTRACT

**Objective:** In this study, a department accreditation system was introduced as a specific way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childcare teachers, and evaluation indicators for department accreditation and the implementation system were derived to find a practical direction.

**Method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related laws and websites were reviewed. In addition, in order to investigate opinions on the composition and implementation system of qualification indicators, a meeting was conducted with professors of the department of childcare teacher education and other qualification experts.

**Results:** In order to introduce a department accreditation system for childcare teacher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relevant laws, and that the operation of an organization affiliated with a public institution is appropriate for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addition, an evaluation index plan composed of three indicators of educational conditions, curriculum, and performance areas was derived.

**Conclusion/Implications:** In this study, a practical preparation plan, such as evaluation indicators and an implementation system, was presented for the introduction of a department accreditation childcare teacher education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accreditation system of childcare teacher education.

**key words** department accreditation, childcare teacher education, *evaluation indicators*

\* 이 논문은 2020년 한국보육진흥원 위탁으로 수행된 연구인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연구」 보고서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1 제1저자

오산대학교 아동보육과 부교수

####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조교수

(e-mail : yumikim7@sookmyung.ac.kr)

#### 3 공동저자

한국보육진흥원 국장

#### 4 공동저자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 I. 서론

교사의 자격은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쳐 교육과 보육의 과정적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Slot, 2018).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교육의 질적 수준 강화와 국가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예로 미국의 교육경제학자 Hanushek(2011)는 우수한 교사에 의한 경제적 가치의 파급력에 대해 교육효과성 면에서 평균적

인 교사보다 1표준편차 이상 상위 즉, 상위 16% 이내에 있는 우수한 교사는 학급의 학생 규모 20명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미래 소득 추정 시 현재 가치 기준으로 연간 40만 불 이상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은 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방안이며 (Oberhuemer, 2005), 교사 전문성이 높을수록 교육과 보육의 과정적 질(process quality)이 높은 경향이 있다(Slot, Lerkkanen & Leseman, 2015). 그러나 우리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학력 및 자격에 차이가 크다는 사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원 전문성의 격차로 기관에 따른 교육보육 서비스 질의 격차가 있을 수 있음과 이로 인해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영유아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이 침해되고 있음을 암시한다(차기주, 박은혜, 2019).

이와 같이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결과, 정부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자격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즉 1991년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영유아보육법에 처음 명시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보육교사 자격에 대한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 보육현장실습 기준 강화, 대면 교과목 기준 명시 등의 노력을 통해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개편하였다. 또한 총 4회(2010, 2014, 2016, 2020년)에 걸쳐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에 대한 표준교과개요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현행 보육교사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도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고, 학과제 기반이 아니라 출신 학과에 관계없이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만 이수하면 2급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개방형 자격 인정 방식, 그리고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 취득이 가능한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일부 보완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즉 여러 선행연구들(김의향, 2013; 서영숙, 박진옥, 서혜전, 2014; 이경인, 김은숙, 양다교, 김명찬, 2017; 이미정, 2013; 이미화, 강은진, 김은영, 김길숙, 엄지원, 2016)에서 개방형 보육교사 양성체계가 양적으로 증가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였다는 점에서는 기여한 바가 있지만, 보육교사의 학력 수준 및 전공 등의 배경이 다양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질 저하라는 문제를 야기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유보통합 및 유보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교사 양성체계에 대한 연구(김은영, 박창현, 김수정, 김혜진, 2018)에서는 통합교사 양성을 위한 학과제 운영 방안으로 수업연한 4년제, 인적성 검사 의무화,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제시하였다. 이에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현행 학점 이수 방식의 개방형 자격 체계를 아동·보육학과 중심의 학과제 방식으로 개선하고, 대학 중심의 보육교사 자격 취득 체계 구축을 통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방안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간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18).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는 학과 전체 교육과정이 예비보육교사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둬으로써 보육교사의 정체성이나 사명감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보육교사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미화 등, 2016; 정미라, 2013).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2018)에서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를 통해 보육교사 양성학과 인정을 위한 평가와 기준에 대해 제시하였고, 2019년 6월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방안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계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이해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처럼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과제 방식의 양성체계를 도입하여 양성학과 인정·관리에 대한 국가 수준의 평가체계를 갖추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이미 국내에서는 유아교육과를 포함하는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국가 수준의 평가가 199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5주기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교원양성 교육의 질을 점검하고 개선을 촉진하고 있다. 여러 선진국들에서도 교원양성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한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모든 교원양성기관은 매 5년을 주기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수준의 평가·인증 준거를 반드시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하의 프로그램들을 퇴출시키고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키는 질 관리를 통하여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박삼철, 2021).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현행의 개방형 체제에서 학과제로 변경하고, 보육교사 양성학과의 교육과정을 국가가 평가하고 인증하여 인증을 받은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일은 보육의 사회적 인식 및 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 나아가 우수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영유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과제라 하겠다. 양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accreditation)은 교육부장관의 인정(Recognition)을 받은 인정기관이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의 학과(전공) 보육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인증(accreditation)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18). 따라서 보육교사 양성학과 인증 획득은 대학의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이 고등교육 관계 법령과 보육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최소요건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양성 프로그램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양성학과에 대한 평가·인증을 통해 국가 수준에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실시한다는 것은 시대적 당위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복잡하게 전개되어온 보육교사의 역사만큼이나 이해 당사자들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고, 기존의 법령과 운영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만큼, 학계 및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학과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실무추진방안과 평가인증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성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학과제 방식의 타 자격(면허) 분야의 자격 및 평가·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학과 평가·인증 실무추진체계 및 평가·인증 지표를 살펴보고,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 실무추진체계 방안 및 평가·인증 지표 구성(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양성학과 평가·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타 자격(면허) 분야의 자격(면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타 자격(면허) 분야의 양성학과 평가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타 자격(면허) 양성학과 평가·인증 인정기관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타 자격(면허) 양성학과 평가·인증 지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5.**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을 위한 실무추진체계 방안 및 평가·인증 지표(안)는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법령 및 홈페이지 자료 고찰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방안 및 실무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다음의 자료를 검색, 분석하였다. 첫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검색을 통해 학과제 방식의 양성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를 두고 양성학과 평가·인증을 시행하는 타 자격, 대표적으로 의학, 보건, 약학 및 건축분야의 자격(면허) 관련 법령 내용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검색을 통해 의학, 보건, 약학 및 건축분야 학과 평가·인증의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기관 프로그램 평가·인증 관련 법령 내용을 살펴보았다. 셋째, 의학, 보건, 약학 및 건축분야의 학과 평가·인증기관의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해당 기관의 역할과 조직, 평가지표 및 판정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 2. 전문가 간담회 실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방안 및 실무추진체계에 대한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타 자격(면허) 평가·인증 관련 전문가 및 교원양성기관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 양성학과 교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타 자격(면허) 평가·인증 관련 전문가의 경우 의학, 보건, 약학, 건축 분야 골고루 섭외를 시도하였으나, 평가업무가 집중되는 시기라 부득이하게 2명의 전문가를 모실 수 있었다. 교원양성기관평가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 양성학과 교원의 경우, 2, 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그리고 지역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전문가 간담회의 주요 질문 내용과 참여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간담회 결과는 간담회 질문 내용을 근거로 해당 내용을 정리, 분석하였다.

표 1. 전문가 간담회 질문 내용

대상	질문 내용
타 자격(면허) 평가·인증 관련 전문가	- 양성학과 평가·인증 체계 도입 시 고려사항 - 양성학과 평가·인증 추진체계의 적절성 - 양성학과 평가·인증 주기 및 지표(안)의 적절성 - 양성학과 평가·인증 절차 및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교원양성기관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 양성학과 교원	-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제도에 대한 입장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하는 평가지표

표 2. 전문가 간담회 참여 대상

구분	일시	집단	참여자수
타 자격(면허) 평가·인증 관련 전문가	2020.10.30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담당자	1명
		약학교육 평가 담당자	1명
교원양성기관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 양성학과 교원	2020.11.02	2,3년제 대학 교수(수도권, 충남권 소재)	2명
		4년제 대학 교수(수도권, 전라권 소재)	2명

### Ⅲ. 결과 및 해석

#### 1. 양성학과 평가·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학과제 방식의 타 자격(면허)에 대한 법적 근거

대표적으로 의학, 보건, 약학 및 건축 분야에서 각각의 자격요건을 명시한 법령에 「고등교육법」 제11조 2에 따른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준다고 규정하였다.

우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에 「고등교육법」 제11조 2에 따른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에서 해당 학과를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에 한해 국가시험 자격을 준다고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2017년 12월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기록사에서 명칭이 변경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고등교육법」 제11조 2조항에 따라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법에서 정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에게 국가시험 자격을 준다고 명시하였다.

약사는 2020년 개정된 「약사법」에 의해 2025년부터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만이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고등교육법」 제11조 2에 따른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에 한해 국가시험 자격을 준다고 명시하였다.

의학 외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건축사를 살펴볼 수 있다. 건축사의 경우 2011년 5월에 개정되어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건축사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1조 2에 따라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원의 인증을 획득한 5년제 이상의 건축학 교육 전문학위 과정을 졸업한 후 등록된 건축사의 책임하에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수련을 받아야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표 3. 양성학과 평가·인증을 법에 명시한 자격(면허) 기준

구분	법령	내 용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 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간호사	의료법	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보건 의료 정보 관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면허) 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 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 (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약사	약사법 (종전)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① 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1.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 한 자 (중략)
	약사법 (개정) 2025. 4. 8. 시행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① 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중략)
건축사	건축사법	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제13조(실무수련)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 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1.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말한다)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중략)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2. 타 자격(면허) 양성학과 평가·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

앞서 살펴본 의학, 보건, 약학 및 건축학 모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고등교육기관 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32호),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교육부고시 제2014-16호)에 양성학과 평가·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에서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인정기관)은 학교의 교육과정(학부, 학과, 전공)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인정기관으로는 평가전문기관,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이 중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분야에 대해서는 제2항에 ‘교육과정을 평가할 수 있다’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무평가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료과정 운영학교(의학, 치학, 한의학, 간호학)는 교육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만 하고, 매년 학생모집요강을 통해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되거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주어진다.

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032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32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본 규정에서도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를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의 경우 평가·인증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인정기관 지도, 감독, 인정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등을 제시하였는데, 교육부에서 인정기관의 지정부터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담당함을 명시하였다.

표 4.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인증의 실시)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중략)
제2조의 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 ①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하 중략)
제4조(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중략)
제5조(인정기관의 지정기준) ①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① (중략)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3)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교육부고시 제2014-16호)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교육부고시 제2014-16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32호)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우선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의를 제시하였는데, [“프로그램 평가·인증”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 및 학문분야를 포함한다)의 운영 등을 평가·인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인정기관의 조직, 기구 및 인력과 같은 체제 기준, 인정기관 지정 기준, 인정기관 지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3. 타 자격(면허) 양성학과 평가·인증 인정기관 현황

교육부에서는 각 관계 부처의 승인 하에 조직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학),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치의학),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의학), 한국간호교육평가원(간호학),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한국약학교육평가원(약학), 그리고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건축학)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분야 평가·인증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최근 평가·인증을 시작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2020년 8월 교육부에서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평가원을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인증을 위한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위한 조직은 인정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평가인증을 시행하는 조직(평가단), 평가결과를 조정하고 심의하는 조직(조정위원회, 판정위원회, 재심위원회, 교육위원회), 평가기준 및 지표, 제도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조직(인증제도개선위원회, 인증기준개발위원회),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사무국, 평가·인증지원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5. 교육부 지정 의무 평가·인증 인정기관

분야	인정기관명	설립연도	법인등록
의학	한국의학교육평가원(KIMEE)	2003.11	보건복지부
치의학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KIDEE)	2007.12	보건복지부
한의학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KOMEET)	2004.10	보건복지부
간호학	한국간호교육평가원(KABON)	2003.10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KAHIME)	2018.12	보건복지부
약학(‘25예정)	한국약학교육평가원(KACPE)	2011.10	보건복지부
건축학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2005.1	국토교통부

### 4. 타 자격(면허) 양성학과 평가·인증 지표 동향

고등교육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시행 2014.4.1.)(교육부고시 제2014-16호, 2014.4.1. 일부개정)에 학과 평가·인증 지표와 관련하여 지표 필수 포함사항 및 절차와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즉 제5조(평가·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 관련 지정기준)에 따르면 평가·인증 기준에 있어서 학과 평가·인증 기준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학교가 자체평가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학교 운영의 전반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평가·인증 대상 학교의 특성화를 위한 다양한 평가·인증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평가·인증 기준의 결정과 변경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평가·인증 시행 당시는 포함되지 않았던 변동사항이 발생



한 경우 이에 대한 평가·인증을 시행하는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인증 심사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시기준, 양식, 절차가 갖추어져 있고 평가·인증 주기와 유효기간이 있어야 하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절차, 공개절차를 갖춘 신뢰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학교육과 약학교육 평가·인증 지표,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 2018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2018) 연구에서 제시한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학교육 및 약학교육 평가·인증 지표

2019년 의학교육 평가인증부터 전면 도입된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은 9개 평가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체 36개 부문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인증유형은 인증과 불인증으로 나뉘고 인증기간은 6년, 4년, 2년으로 구분된다. 인증 유지를 위해서는 2년마다 중간평가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차기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학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표 6.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지표 구성

평가 영역		평가부문(36)
1. 사명과 성과	1-1 사명	1-3 교육성과
	1-2 대학의 자율성	1-4 사명과 교육성과 수립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2-5 임상학과 슬기
	2-2 과학적 방법	2-6 교육과정의 구조, 구성, 기간
	2-3 기초의학	2-7. 교육과정 관리
	2-4 의료인문학	2-8 의료행위와 보건의료분야의 연계
3. 학생평가	3-1 평가방법	3-2 평가와 학습의 관계
4. 학생	4.1 입학정책과 선발	4.3 학생상담과 지원
	4.2 입학정원	4.4 학생대표
5. 교수	5.1 채용과 선발정책	5.2 교수활동과 개발 정책
6. 교육자원	6.1 시설	6.4 의학연구와 의과학자 양성
	6.2 임상실습자원	6.5 교육 전문성
	6.3 정보기술	6.6 교육적 교류
7. 교육평가	7.1 교육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체제	7.3 학생과 졸업생의 수행능력
	7.2 교육자와 학생의 피드백	7.4 이해관계자의 참여
8. 교육자원	8.1 대학운영체계	8.4 행정직원과 관리
	8.2 학장과 보직자	8.5 보건의료분야와의 상호작용
	8.3 교육예산과 자원 할당	
9. 지속적 개선	9.0 지속적 개선	

출처: 한국의학교육평가원(2021)

약학교육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이 8개 평가영역, 총 6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 권장, 우수 문항으로 구분된다. 평가수준은 최소 요건인 필수, 지향하는 요건인 권장, 지향하는 최상의 요건인 우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 문항 내 필수, 권장, 우수 평가기준이 중복되어 구성된 문항도 있다. 인증유형은 완전인증은 5년간 인증이 유효하며, 조건부 인증은 3년 인증이 유효하며 불인증의 3가지 유형으로 판정한다.

표 7. 약학교육 평가지표 구성

평가영역	평가부문(21)		
1. 사명과 인재상	1.1 미션과 비전	1.2 인재상	1.3 대학발전계획
2. 운영	2.1 행정 및 운영	2.2 재정	
3. 교육과정	3.1 졸업성과	3.2 교육과정 설계	3.3 교육과정 운영
	3.4 교육성과 평가		
4. 학생	4.1 학생선발	4.2 학생지도와 학생활동	4.3 학생지원
	5.1 전임교원 확보	5.2 실습교육자 확보	5.3 교수 연구 및 봉사
5. 교원	5.4 교원 역량강화 및 지원		
	6.1 교내 교육시설 및 환경	6.2 실무실습 교육시설 및 환경	
6. 교육환경 및 시설			
7. 졸업 후 교육	7.1 대학원 교육	7.2 평생약학교육	
8. 지속적 개선	8.1 지속적 개선 노력		

출처: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홈페이지(<http://kacpe.or.kr>)

## 2)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교원양성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199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5주기 평가지표가 적용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교원양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원양성기관의 책무성과 법적 책임을 확보하고자 하며, 학생 수 급감과 같은 사회변화에 따른 교원의 수급을 고려한 양성규모 적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유아교육학과와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일부 아동 및 보육관련 학과에서 의무적으로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받고 있어,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가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는 양성과정별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육과(3개 영역, 11개 항목, 13개 준거, 26개 지표), 일반대학 교직과정(3개 영역, 10개 항목, 12개 준거, 23개 지표), 교육대학원: 양성기능(3개 영역, 11개 항목, 13개 준거, 28개 지표), 교육대학원: 재교육기능(3개 영역, 10개 항목, 11개 준거, 17개 지표)으로 구분된다. 평가단위별 지표 중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육과에 해당하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표 8.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지표 구성

영역	진단항목	진단준거	진단지표
1. 교육여건 영역 (350점)	1.1 발전계획 (40)	1.1.1 발전계획적합성(40)	1.1.1.1 발전계획(특성화 포함)
			1.2.1.1 전공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1.2 교원 (250)	1.2.1 교원확보의 적절성(180)	1.2.1.3 교과교육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1.2.1.4 교과교육과목 교수자 전공 일치도
			1.2.1.5 교직이론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1.2.1.6 교직이론과목 교수자 전공 일치도
			1.2.2.1 전임교원 연구실적 최소기준 충족률
	1.3 행.재정 (50)	1.3.1 행·재정운영의 적절성(50)	1.2.2.2 강의 만족도 및 강의평가 운영의 적절성
			1.3.1.1 교육비(장학금 등) 환원율
	1.4 수업환경 (10)	1.4.1 수업환경의 적절성(10)	1.3.1.2 행정지원의 충실성
1.4.1.1 시설 활용의 적절성			
2. 교육과정 영역 (500점)	2.1 교육과정 (160)	2.1.1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160)	1.4.1.2 장애학생 선발 비율 및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노력
			2.1.1.1 교원자격 취득자의 검정기준 충족
			2.1.1.2 교과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개선 계획
	2.2 수업 (200)	2.2.1 수업의 충실성(200)	2.1.1.3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개선 계획
			2.2.1.1 수업 규모의 적절성
			2.2.1.2 수업 운영의 현장성
			2.2.1.3. 학생 수업 역량 제고 노력
	2.3 학생 (70)	2.3.1 학생 선발 및 지도의 적절성(70)	2.2.1.4 교수자 역량 개발의 충실성
			2.3.1.2 학생지도체제 구축 및 운영 실적
	2.4 교육실습 (70)	2.4.1 교육실습 운영의 체계성(70)	2.3.1.3 학생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2.4.1.1 교육실습체제 운영 실적 및 개선 노력			
3. 성과영역 (150점)	3.1 운영성과 (30)	3.1.1 학생유지 성과(30)	3.1.1.1 신입생 충원율 및 중도탈락 학생비율
			3.2.1.1 교원임용률 및 관련 분야 취업률
	3.2 교육성과 (110)	3.2.1 교원임용 및 취업 성과(70)	3.2.2 교육 만족도(40)
			3.2.2.1 재학생 만족도
	3.3 환류성과 (10)	3.3.1 환류노력(10)	3.3.1.1 환류노력
3개 영역 (1,000점)	11개 항목	13개 준거	26개 지표

3)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2018)의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 지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2018)의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방안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지표를 교원영역, 교육과정영역, 성과영역의 3개 영역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라 7개 항목, 15개 평가지표로 제안하였다.

표 9.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2018)의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지표 구성(안)

영역	항목	진단지표
교원 영역	1-1 교원확보의 적절성	1-1-1. 전공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1-1-2. 시간강사 강사료 수준
	1-2 전임교원 활동의 적절성	1-2-1. 전임교원 연구실적 최소기준 충족률 1-2-2. 강의만족도
교육 과정 영역	2-1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2-1-1. 보육교사 자격취득자 검정기준 충족 2-1-2. 현장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및 실적
	2-2 수업의 충실성	2-2-1. 전공개설과목 교수자 전공일치 수업학점 비율 2-2-2. 강좌당 학생 수 2-2-3. 수업의 질 관리
	2-3 보육실습 운영의 충실성	2-3-1. 보육실습 운영 실적
성과 영역	3-1. 학생유지 성과	3-1-1. 중도 탈락 학생 비율 3-1-2. 제2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등 학생 비율) 3-1-3. 신입생 충원율
	3-2. 학생의 교사역량 성취	3-2-1. 학생의 수업 수행 능력 3-2-2. 재학생 만족도

### 5.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및 실무추진체계 방안과 평가·인증 지표 구성(안)

#### 1) 타 자격(면허) 평가·인증 전문가 간담회 내용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을 위한 추진체계 및 평가·인증 지표(안)에 대해 타 자격(면허) 평가·인증 인정기관 실무자 대상의 간담회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타 자격(면허) 평가·인증 실무자의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에 대한 의견

구분	주요 내용
1 학과제 평가·인증 체계 도입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성학과 평가·인증의 방향은 정원감축 등이 아니라 보육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이는 대외적으로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음</li> <li>(약학교육 평가) 법령 개정 → 시범평가 → 인정기관 지정 → 1주기 평가 실시(법령 시행) 등의 순서로 진행 예정</li> </ul>
2 학과제 평가·인증 추진 체계의 적절성	<p>(평가·인증 인정기관: 단독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점: 평가의 공정성 확보, 컨설팅 등 후속 조치 가능</li> <li>단점: 운영비 부족 우려, 대학에서 평가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갈등 소지 있음</li> <li>예: 의료분야 평가·인증 인정기관(상당 금액의 수수료 있음)</li> </ul> <p>(평가·인증 인정기관: 공공기관 산하 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점: 공공기관 직원의 검적으로 운영비 절감</li> <li>단점: 담당 부처의 예산 지원 필요, 장기적인 평가인증 계획 수립 어려움</li> <li>예: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센터</li> </ul> <p>(위원회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심위원회, 전문위원회, 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와 평가사업단은 비상시적인 조직으로 운영</li> </ul>

표 10. 계속

구분	주요 내용
3	학과제 평가·인증 주기 및 지표(안)의 적절성 (평가주기) 4년 (평가지표 개발 기준) • 전문적인 보육교사, 전문적인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훌륭한 교육과정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여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 가능 • 평가지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평가의 주안점을 명확하게 하고, 척도화함(대학 소재지 및 교육연한에 따른 지표 차이) • 동일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양성교육과정이므로 많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됨 • 교육연한에 따른 차이: 교원확보율, 현직경험, 연구실적 • 대학소재지에 따른 차이: 신입생 충원율, 중도탈락 학생 비율, 교수자의 전공일치도(가장 중점을 두는 지표) 교육과정(실습포함)
4	학과제 평가·인증 절차 및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 평가·인증 준비로 대학교육의 질이 낮아진다는 비판 있음 • 시범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 • 유아교육과,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보육 및 아동학과의 경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과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를 중복해서 받아야 한다는 반발 우려 있음. 동일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사(누리과정) 양성과정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지표가 다르다는 것도 논리적인 모순임 • 평가·인증 현장실사 평가: 담당자가 동행하지 못할 경우 비윤리적 진행 가능성 있음

간담회 내용 중 평가·인증 인정기관 구성, 평가·인증 지표 구성방향, 평가·인증 절차 및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평가·인증 인정기관 구성 방향: 단독 기구 vs 기존 조직의 산하 기구**

평가·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단독 기구일 경우, 평가의 공정성 확보에 보다 유리하고, 평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다만 담당 부처에서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부처에서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학 입장에서 수수료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의학, 보건, 약학 등 대부분의 자격(면허) 분야의 평가·인증 인정기관이 단독 기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육 관련 공공기관 산하 ‘보육교사 양성기관 평가센터(가칭)’ 등 기존 조직의 산하 기구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 중에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 업무를 하는 사람은 겸직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평가·인증 계획을 수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단독기구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산하 기구에서 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상 공정하게 평가·인증을 진행한다면 공정성 시비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원양성기관 평가 사업을 담당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가 될 수 있다.

기관이 독립해서 평가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는 게 맞지만 예산 압박이 있습니다. 인정기관 지정을 받아도 의료 쪽은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

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대학들도 평가비를 내는 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약학교육 평가 담당자>

## (2)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 · 인증 지표

합리적인 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지표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경우 역량진단 편람에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인성 함양’을 진단의 주안점으로 제시하였지만 이도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근본적으로 동일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양성교육과정인므로, 큰 차이를 둘 필요는 없지만, 일부 평가지표에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현실적 어려움 반영하여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에 지표 또는 달성 기준에 차이를 둘 수 있다고 하였다.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경우, 교원확보율, 교원의 현직경험(전문대에 해당), 연구실적 등에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전문대는 정량지표는 더 낮게 척도를 설정하죠. 교원확보율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도 4년제보다는 더 낮게 되어있어서.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데 척도 상으로 조금 낮추어 주는 게 있고, 지금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전문대만 특별히 하고 있는 건 교원의 현직 경험 이 정도만 차별화가 있지 딱히 4년제와 구분되지 않아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담당자>

평가지표 중 가장 중점을 두는 지표에 대해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경우, 종전에는 교육여건 영역 비중이 높았는데 점점 교육과정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교육여건의 경우 소규모 대학이 불리할 수 있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내에 실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습에 대한 관리 부분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전에는 교육여건 영역이 가장 배점이 높았는데 점점 교육과정 영역에 점수가 더 배정이 되었어요. 교육부에서도 교사의 질은 양성교육과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과정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교육 여건은 대규모 대학이 유리하기 때문에 여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작지만 열심히 하려는 대학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해서 교육여건 점수를 줄였습니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담당자>

## (3) 평가 · 인증 절차 및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학과에서 평가 · 인증 준비로 수업을 충실하게 하지 못해서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과 단위 평가이다 보니, 전임교원이 적은 학과의 경우 몇 명이 평가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평가 준비하느라 수업에 충실하지 못해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는 의견도 있어요. 평가 때문에 대학 교육 현장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담당자>

누리과정으로 교육과정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모두 양질의 교육과정에서 양성되어야 한다고 하면,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논리적인 모순을 갖게 됨을 언급하였다. 이에 유아교육과와 교직과정이 운영되는 보육 및 아동 관련학과의 경우 비슷한 지표로 두 번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지표가 겹치거든요. 비슷한 평가를 두 번 받게 되는 건데 이게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대학역량진단과 교원양성기관 평가지표는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담당자>

## 2)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 양성학과 교원 대상 간담회 내용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을 위한 추진체계 및 평가·인증 지표(안)에 대해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경험한 보육교사 양성학과 교원 대상의 간담회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원의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에 대한 의견

구분	주요 내용
1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제도에 대한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입학자원 감소 현실 등을 반영하여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면서, 대학에서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을 적절한 수준의 평가기준 적용 필요</li> </ul>
2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하는 평가지표	<p>[필요한 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적절성</li> <li>• 보육실습의 체계적 운영: 보육실습지도의 내용</li> <li>• 교수자 전공 일치도: 전공의 범위 고민 필요</li> <li>• 강좌당 학생수: 보육관련 교과목 전체, 일부 교과목만 운영할 경우, 해당되지 않는 교과목으로 부정적 풍선효과 우려 있음</li> </ul> <p>[검토 필요한 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기여: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보수교육 등</li> <li>• 대면교과목의 충실한 운영</li> <li>• 중장기 발전계획</li> <li>• 학생상담 및 지도체계</li> </ul> <p>[검토 필요한 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입생 충원율</li> <li>• 중도탈락 학생 비율</li> </ul>

간담회 내용 중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에 대한 입장과 평가·인증 지표에 대한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제도에 대한 입장

입학자원 감소와 보육 관련 학과가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과가 아니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평가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평가기준은 대학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편 타 학과의 경우 평가를 받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 시설설비, 교원 충원을 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학에서 학과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지금보다는 지원을 더 많이 하도록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간호학과 평가 경우를 보면 학교에서 간호학과에 시설설비, 교원충원률 등을 지원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밸런스를 잘 맞춰야할 것 같아요. 학교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학과를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질적인 담보할 수 있는 정도로 학교에서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수도권 4년제 대학 교수>

### (2)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하는 평가·인증 지표

전공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정성평가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단순히 사전, 본, 사후 실습이 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실습이 충실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학과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학생들이 교육내용 지식, 교수방법 등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되었는가, 교육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계열성 있게 잘 구성 되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전라권 4년제 대학 교수>

단순히 사전실습을 했다가 아니라 실습 과정에서 실습지도교사와 교수가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실습해 줄 것인지 사전 협의를 하였는지, 지도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였는지 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 4년제 대학 교수>

한편, 신입생 충원율과 중도탈락 학생 비율 지표의 경우 필요하면 포함해야 하겠지만, 솔직히 매우 부담스러운 지표라고 하였다. 또한 일부 학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 대학의 경우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도 좋으니 졸업만 하라고 설득을 하는 등 부작용이 많이 있다고 하였다.

지방 작은 대학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중간에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학교에서는 중도탈락 학생을 막으라고 요구하니까 수업에 안 나와도 된다, 무조건 졸업만 하라고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도탈락 학생 비율에 대한 대학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전라권 4년제 대학 교수>

### 3)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을 위한 실무추진체계 방안

타 자격(면허)의 양성학과 평가·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실무추진체계와 평가·인증 지표를 고찰하고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을 위한 실무추진체계 방안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 실무추진체계 방안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 인정기관 설립 방안이다. 타 자격(면허) 평가·인증 인정기관 중 의학 계열을 비롯한 대부분이 단독 기구로 운영되고 있고, 평가·인증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피평가 대학으로부터 상당 금액의 평가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육교사 양성학과의 경우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에 공감할 지라도 대학이 비용을 지불하고 평가를 받을 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관련 공공기관의 산하 조직으로 ‘보육교사 양성교육 평가센터(가칭)’를 설립하여, 평가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공공기관에서 공정한 평가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센터’와 유사한 운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을 위한 예산 확보의 문제이다. 공공기관 산하 조직으로 운영할지라도 센터 운영 및 평가·인증 진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을 위한 예산 확보 역시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피평가 대상 대학(학과)에 평가 수수료를 받을 것인지, 받는다면 어떤 정도의 수준이 적절할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겠다.

셋째,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시기이다. 보육교사 자격은 보건복지부 수여 자격이지만,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때 인정기관 지정이 늦어지게 되면 법령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평가·인증을 받은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령 시행 이전에 보육교사 양성학과에 대한 1주기 평가가 마무리되어야 하는 만큼, 인정기관 지정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법령 시행 시점 역시 약학대학 평가·인증과 같이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겠다.

위 고려사항들을 바탕으로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 인정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하고, 인정기관에 평가·인증 운영을 위한 인증판정위원회, 재심위원회, 평가사업단, 전문위원회, 사무국 등을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인증판정위원회, 재심위원회, 평가사업단, 전문위원회 경우 위원은 구성되어 있으나 비상시 조직으로 평가 및 해당 업무가 있을 때 활동하도록 한다.



그림 1.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 인정기관 조직 구성(안)

표 12.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 인정기관 조직 구성 및 역할

조직	역할	
인증판정위원회	자체평가보고서, 평가사업단의 평가결과보고서, 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논평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인증 결과 판정	
재심위원회	인증판정위원회에서 제시한 판정결과에 각 피 평가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심의 진행	
평가사업단	평가팀 조정위원회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평가팀간의 평가결과 조정
전문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기준개발위원회	평가·인증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평가·인증 기준 및 지표 개정안 마련
사무국	평가 신청 접수, 평가 진행, 평가 결과 공지 등 평가·인증 제반 업무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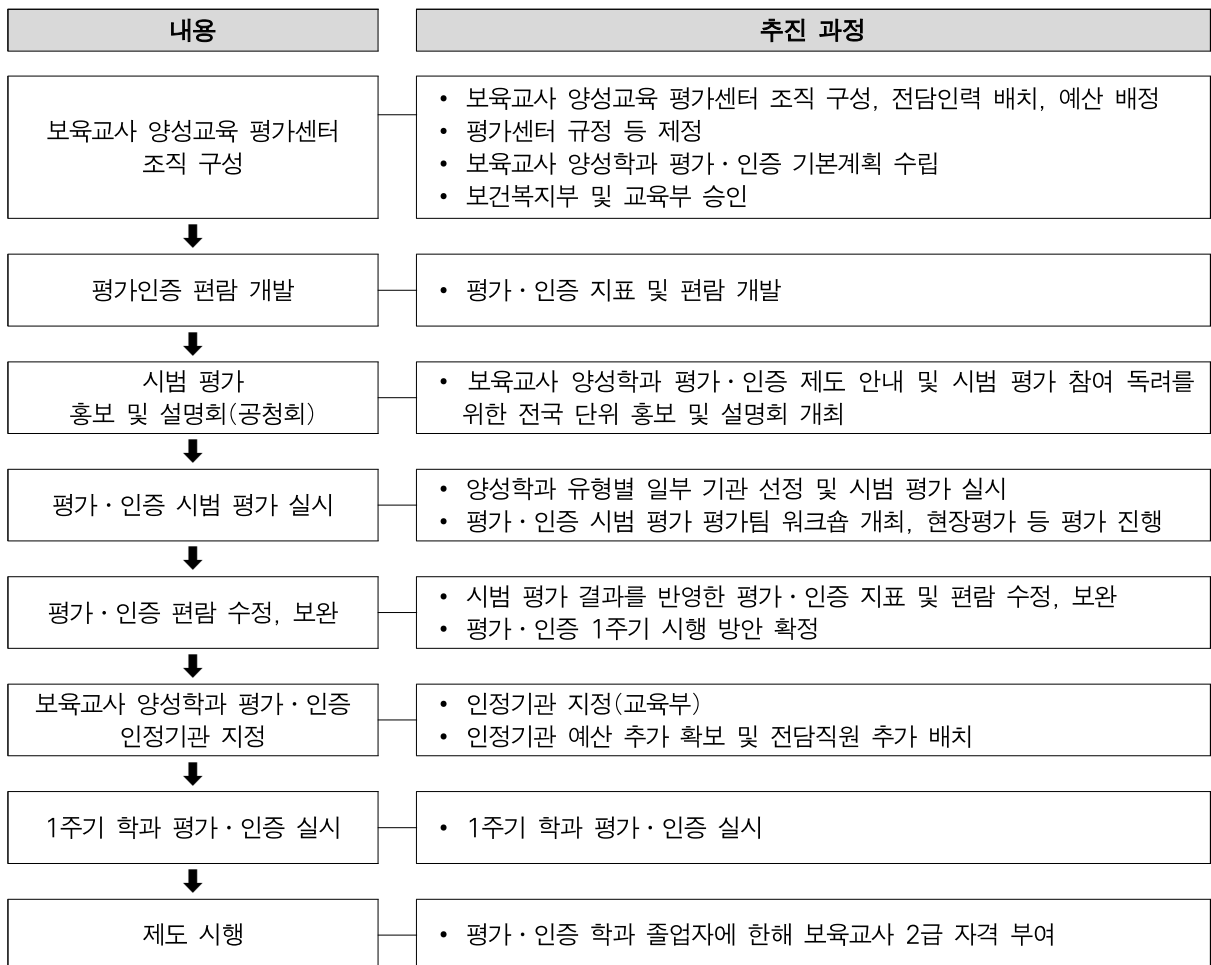


그림 2.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 추진 과정(안)

4)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 지표 구성(안)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에 양성교육과정에 특화된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2018)의 보육교사 양성학과 인정 기준을 토대로,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5주기 지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지표를 참고하여 발전계획의 적합성, 수업환경, 학생지도체계 구축 및 운영실적, 관련 분야 취업률 등을 추가하였다.

평가 대상은 보육교사 양성학과이고, 평가 방식은 준거지향 절대평가로 평가지표별 최소 수준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육교사 양성학과의 인증 여부를 판정한다. 보육교사 양성학과 인정을 위한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이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영역의 3개 영역, 10개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영역 및 지표 구성(안)은 다음과 같다.

표 13.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 지표 구성(안)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구분	
1. 교육여건 영역	1.1 발전계획	1.1.1 발전계획 적합성(특성화 포함)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비전, 목표, 전략 등	정성	
	1.2 교원확보의 적절성	1.2.1 전공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입학정원 대비 전임교원 수	정량	
		1.3.1 전임교원 연구실적 최소기준 충족율	전임교원의 논문, 저역서 등 연구실적	정량	
	1.3 전임교원 활동의 적절성	1.3.2 강의만족도 및 강의평가 운영의 적절성	강의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전공교과목 비율	정량 정성	
1.4 수업환경		1.4.1 시설활용의 적절성	모의수업, 실험실습 환경 확보	정성	
2. 교육과정 영역	2.1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2.1.1 보육교사 자격취득 검정기준 충족	학생의 보육교사 자격취득 기준 충족 여부	정량 정성	
		2.1.2 현장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개선계획	보육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 개발 위한 교육과정 운영	정량 정성	
	2.2 수업의 충실성	2.2.1 전공개설과목 교수자 전공일치	교수자의 전공과 교수 교과목의 일치 비율	정량	
		2.2.2 수업규모의 적절성	교과목의 강좌당 학생 수	정량	
		2.2.3 교수자 역량 개발의 충실성	대학, 학과 차원의 교수자 역량 개발 지원	정성	
	2.3 학생선발 및 지도의 적절성	2.3.1 보육교사 적격자 선발을 위한 노력	학생 선발에서의 적격자 선발 절차	정성	
		2.3.2 학생지도체계 구축 및 운영실적	학생의 학습, 진로 지도 체계	정성	
	2.4 보육실습 운영의 충실성	2.4.1 보육실습 운영 실적 및 개선노력	보육실습 이론과목과 현장실습의 체계적 운영	정성	
3. 성과 영역	3.1 학생유지 성과	3.1.1 신입생 총원율	대학정보공시 기준 신입생 총원율	정량	
		3.1.2 중도탈락 학생 비율	대학정보공시 기준 중도탈락 학생 비율	정량	
		3.1.3 보육 관련 분야 취업률	보육 관련 분야 취업 현황	정량	
	3.2 학생의 보육교사 역량 성취	3.2.1 학생의 영유아 지원 역량 제고 노력	영유아 지도 역량을 위한 실습수업 운영	정량 정성	
		3.2.2 재학생 만족도		재학생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등에 대한 만족도	정량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양성학과 평가·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타 자격(면허) 분야의 자격 및 평가·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학과 평가·인증 실무추진체계 및 평가·인증 지표를 살펴보고,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 실무추진체계 방안 및 평가·인증 지표 구성(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타 자격(면허)에 대한 법령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 국가시험 자격 및 면허를 준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즉 의학, 보건, 약학 및 건축 분야의 경우 각각의 자격요건을 명시한 법령에 「고등교육법」 제11조 2에 따른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준다고 규정하였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약사의 경우 「약사법」,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경우, 국가시험과 함께 학과 평가·인증을 통해 양성교육과정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육교사 또한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전문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좌우하는 양성교육과정의 질 관리는 불가피하다. 타 자격과정에서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등의 관련 법령에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의학 및 건축 분야의 양성학과 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32호),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교육부고시 제2014-16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각 관계 부처의 승인 하에 조직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학),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치의학),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의학), 한국간호교육평가원(간호학),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한국약학교육평가원(약학), 그리고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건축학)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분야 평가·인증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의학 분야의 사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두 트랙 체제로 운영됨을 볼 수 있었다. 즉 보건복지부가 국가시험 및 면허를 관리하고, 교육부가 인정기관 지정 및 대학의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을 관리하였다. 이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교육부가 인정기관 지정 및 양성교육기관 평가·인증을 담당하고, 보건복지부가 평가·인증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한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관리를 담당하는 체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위한 조직은 인정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평가·인증을 시행하는 조직(평가단), 평가결과를 조정하고 심의하는 조직(조정위원회, 판정위원회, 재심위원회, 교육위원회), 평가기준 및 지표, 제도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조직(인증제도개선위원회, 인증기준개발위원회),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

(사무국, 평가·인증지원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을 위한 인정기관의 조직 구성 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의학교육, 약학교육, 교원양성기관 평가 지표 사례를 검토한 결과 각 전문 양성교육과정 인증을 위한 평가지표는 해당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적에 맞는 인력양성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평가·인증 지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타 자격(면허) 평가·인증 전문가 대상 간담회 실시 결과,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의 방향은 정원감축 등의 목표가 아니라 보육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이는 대외적으로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인증 인정기관을 단독기구로 설치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 확보, 컨설팅 등 후속 조치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학에서 높은 금액의 수수료를 받아야 하고 운영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평가·인증 인정기관을 공공기관 산하 조직으로 설치할 경우, 운영비 등을 절감할 수 있으나 담당 부처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평가주기는 4년 정도가 적당하고,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질적 수준과 논리적으로 연계되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평가·인증 지표에서는 동일한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교육과정이므로 대학 소재지 및 교육 연한에 따라 지표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일부 지표에서 여건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유아교육과 및 교직과정 운영 보육 관련 학과의 경우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를 중복해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반발 우려가 있다.

또한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 양성학과 교수 대상 간담회 실시 결과, 평가지표로 전공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 보육실습의 체계적 운영, 교수자 전공 일치도, 강좌당 학생 수, 지역사회 기여도, 대면교과목의 충실한 운영, 중장기 발전계획, 학생상담 및 지도체계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고, 신입생 충원율과 중도탈락 학생 비율 지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보육교사 양성학과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신입생 충원율과 중도탈락 학생 비율을 포함한다면 배점을 낮게 하여, 대학의 소재지 등에 따른 불이익이 크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을 위한 실무추진체계 방안 및 평가·인증 지표 구성(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정기관은 단독기구, 공공기관 산하 기구 등으로 운영 가능한데, 보육의 경우 공공기관 산하 기구 운영 방안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보육교사 양성교육 평가센터(가칭)를 공공기관 산하 기구로 구성하고, 평가사업단(조정위원회 포함), 각종 위원회(인증판정위원회, 재심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기준개발위원회), 사무국 등의 조직을 두는 것이 가능하겠다. 제도 도입과정은 보육교사 양성교육 평가센터(가칭) 설립 후 평가·인증 편람 개발 완료, 시범평가를 위한 홍보 및 설명회 실시, 시범 평가 실시, 시범평가 결과를 반영한 지표 및 편람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쳐 양성학과 평가·인증의 기반을 닦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보육교사 양성교육 평가센터(가칭)가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법령 시행 이전에 1주기 평가·인증을 완료하는 일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평가 지표 구성(안)으로는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 방안 연구(2018)에서 도출된 주요 영역인 교원영역, 교육과정영역, 성과영역의 구분

을 기준으로 고등교육기관 대상 평가인 한국대학평가원평가지표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지표 내용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가영역을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영역의 3개 평가영역으로 구성하고, 교육여건 영역에서는 발전계획, 교원확보의 적절성, 전임교원 활동의 적절성, 수업환경,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수업의 충실성, 학생선발 및 지도의 적절성, 보육실습 운영의 충실성, 성과영역에서는 학생유지성과, 학생의 보육교사 역량 성취, 총 10개의 평가항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 및 논의 사항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이 선행되어야 그 실행적 시사점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보육과 유아교육 통합에 대한 논의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을 시행하면, 유아교육과와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보육 관련 학과의 경우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를 중복해서 받게 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같은 목표 하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중복 평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대학 대상의 공통지표로 개발되었으나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유형이 다양하므로 4년제 대학, 전문대, 원격대학, 학점은행제에 대한 공통지표를 마련할 것인지 또는 대학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표를 마련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기존 보육교사 양성학과 중심으로 양성교육과정 평가·인증 지표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하지만 보육교사 양성학과의 경우 대학의 학사구조개편 방향에 따라 신규 개설, 폐지 등의 변동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신규 개설 및 폐지 학과에 대한 규정이 영유아보육법령에 명시되어야 하고, 기존 운영 학과뿐만 아니라 신규 개설 및 폐지 학과에 대한 평가·인증 절차 및 평가·인증 지표 역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는 양성교육뿐만 아니라 자격제도의 안정화, 사회적 인식제고, 보육교직원 정책 방향 및 지원 예산, 재교육 내실화, 다각적 인프라 구축, 경력관리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김의향, 박진옥,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을 통한 양성교육과정의 질 관리는 다양한 보육교직원 관련 정책 수립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을 위한 실무추진체계 및 평가·인증 지표 등 실무적 준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과 기반 보육교사 양성체계 안착 및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질 관리를 통한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은영, 박창현, 김수정, 김혜진 (2018).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 교사를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의향 (2013. 4).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관리와 처우개선 방안**.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발표 논문, 서울.

- 김의향, 박진옥 (2018). 보육교직원 자격과 재교육 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고찰. **한국보육학회지**, 18(2), 129-145. doi:10.21213/kjcec.2018.18.2.129
- 박삼철 (2021). 전문성과 표준화를 지향하는 호주의 교원양성제도 혁신 과정 및 특성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9(1), 173-192. doi:10.22553/keas.2021.39.1.17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n. d.). 건축사법. <https://www.law.go.kr>에서 2021년 7월 5일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n. d.).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에서 2021년 7월 5일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n. d.). 약사법. <https://www.law.go.kr>에서 2021년 7월 5일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n. d.). 의료법. <https://www.law.go.kr>에서 2021년 7월 5일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n. d.).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에서 2021년 7월 5일 인출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18).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 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 서영숙, 박진옥, 서혜전 (2014). 보육교직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4), 5-28. doi:10.14698/jkccc.2014.10.4.005
- 이경인, 김은숙, 양다교, 김명찬 (2017). 유보통합에 대비한 유아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고찰-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1(3), 151-180.
- 이미정 (2013). 통합교사 자격체계 방안의 모색. **한국보육학회지**, 13(4), 387-402.
- 이미화, 강은진, 김은영, 김길숙, 엄지원 (2016).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보육실습 매뉴얼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정미라 (2013. 9). **유보통합과 유아교사의 전문성**. 한국유아교육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주제강연 논문, 서울.
- 차기주, 박은혜 (2019). 미국 유아교육과 보육 종사인력의 자격과 학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6(1), 245-273. doi:10.24211/tjkte.2019.36.1.249
- 한국교육개발원 (2019). **2019~2020년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편람**.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약학교육평가원 (n. d.). 약학교육 평가지표. <https://kacpe.or.kr>에서 7월 5일 인출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2021). **ASK(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서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 Hanushek, E. A. (2011). The economic value of higher teacher quality.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30(3), 466-479. doi:10.1016/j.econedurev.2010.12.006
- Oberhuemer, P. (2005). Conceptualising the early childhood pedagogue: Policy approaches and issues of professionalism. *Europ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Journal*, 13(1), 5-16. doi:10.1080/13502930585209521
- Slot, P. (2018).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process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 literature review*. OECD Education Working Papers No. 176, Paris: OECD Publishing. doi:10.1787/edaf3793-en

Slot, P., Lerkkanen, M. K., & Leseman, P. (2015). *The relations between structural quality and process quality in Europ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rovisions: Secondary analyses of large scale studies in five countries*. [https://ecec-care.org/fileadmin/careproject/Publications/reports/CARE\\_WP2\\_D2\\_\\_2\\_Secondary\\_data\\_analyses.pdf](https://ecec-care.org/fileadmin/careproject/Publications/reports/CARE_WP2_D2__2_Secondary_data_analyses.pdf)에서 2021년 7월 30일 인출

논 문 투 고 : 21.08.12

수정원고접수 : 21.09.09

최종게재결정 : 21.10.05